

군포도시공사 제8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2024년 1월 15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23 호

## 군포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군포도시공사 임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장은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시설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지 원 부
입 안	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자	담당자 성명 (전 화)	현 진 환 ( 3 9 0 - 7 6 0 9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임명자격기준)</p> <p>임원의 임명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1. <u>사장은 공무원 5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공무원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u></p> <p>2. <u>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3. <u>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시설공단 또는 공사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4. <u>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5. <u>그 밖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p>	<p>제5조(임명자격기준)</p> <p>(현행 유지)</p> <p>1. ----- <u>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2. ----- ----- <u>4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u></p> <p>3. ----- ----- <u>3급 이상으로</u> ----- -----</p> <p>4. (현행 유지)</p> <p>5. <u>임원추천위원회에서 위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u></p>